

『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20일

나. 발 의 자 : 이명희, 김성현, 김정곤, 김정미, 박주연, 윤영철(6명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4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명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회 업무를 추진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위촉기간을 “1월”에서 “1년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3항)
- 수당 지급 규정을 “자문기간이 끝나는 날”에서 “매월 말일”로 변경하고, “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 할 수 있다” 규정 추가(안 제7조제2항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제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‘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

-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회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임.

○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위촉기간을 “1월”에서 “1년”으로 변경하였으며,
- 수당 지급 규정을 “자문기간이 끝나는 날”에서 “매월 말일”로 변경하고, “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” 규정 추가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전문가 위촉기간이 1월 이내로 제한되어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적기 자문 곤란과 시기 일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
- 위촉기간의 연장으로 상시적 전문가 자문 활용을 통해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